

#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정숙남 의원)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정숙남, 김지원, 최복춘,  
이종희 의원(4명)

찬 성 자 : 김석규, 박일배, 송은영,  
최순희, 이기준, 이묘배  
의원(6명)

## 1. 제안이유

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'24. 1. 26. 시행)에 따라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근거 법령 및 정의 명확화(안 제1조 및 제2조)
- 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 ~ 제13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9조
-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양산시조례 제 호

##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이 조례는 향교”를 “이 조례는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향교”로, “양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양산시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향교”란 향교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”을 ““향교”란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”으로, “시의”를 “양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향교전통문화발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제3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시장이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향교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·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.

1. 당연직: 향교 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위촉직

가.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나. 향교 전통문화 관련 법인·단체의 대표자

다. 향교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

라. 그 밖에 시장이 향교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향교 전통문화 분야의 특수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위촉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협의체의 운영)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,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<u>“향교”란 향교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시설로서 현재 <u>시의</u> 지원을 받아 보존 및 관리 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u>향교</u>----- <u>양산시</u>-----</u>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<u>“향교”란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---</u></p> <p>--- <u>양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</u> -----.</p> <p>제11조(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<u>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<u>향교전통문화발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u></p> <p>② <u>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u></p> <p>1. <u>제3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시장이 향교 전통문</u></p>

<신 설>

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향교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·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.

1. 당연직: 향교 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위촉직

가.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나. 향교 전통문화 관련 법인·단체의 대표자

다. 향교 전통문화 관련 분야

의 교수 등 전문가

라. 그 밖에 시장이 향교의 계  
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 
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 
있다. 다만, 향교 전통문화 분야  
의 특수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  
해 재위촉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 
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 횟  
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 
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  
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 
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
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13조(협의체의 운영) ① 협의체  
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  
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  
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  
우,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회  
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 
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  
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 
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니한다.

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 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 
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
한다.

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  
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
「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 
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▣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협의체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·시민단체·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협의체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▣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6조(협의체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·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.

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